

---

# 2016~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

2015. 8.



행 정 자 치 부  
재 정 정 책 과

# 목 차

## I.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1. 제도의 의의	1
2. 근거규정 및 연혁	2
3. 수립체계	4

## II. 지방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 전망	6
2. 국가 재정운용 전략	9
3.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여건	11

## III. 2016~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 기본방향	20
2. 대상 및 작성기준	21
3. 2016~2020년 수립기준 변경사항	22
4. 세부 작성내용	24
5. 계획 수립 세부일정	36

## IV. 행정사항

### <참고자료>

【1】 중기지방재정계획 서식	39
【2】 세출 기능별 분류체계 설명서	60

## 1. 제도의 의의

### □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 제도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
  -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 2. 근거규정 및 연혁

###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14.5.28 공포)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 □ 연 혁

- ('8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지방재정법)
- ('91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국무회의 보고 규정
- ('93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95년)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 협의 추진
- ('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 조정(4월→11월)
- ('07년)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 ('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연도 변경(다음 회계년도부터 5회계연도)

### 3. 수립 체계

#### □ 수립 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국무회의 보고

#### □ 주요 내용

-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 □ 수립 절차

①	행정자치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작성, 자치단체 통보
②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안) 수립
③	지방자치단체	■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④	지방자치단체	■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 지방의회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
⑤	행정자치부	■ 전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 관계부처 협의
⑥	행정자치부	■ 국무회의 보고,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

## □ 수립 과정에의 외부 참여 제도 활용 권고

### ① 【외부 의견수렴】

-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 주민참여예산제가 전면시행('11.9.9)되고 있으므로,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절차를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 ②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 (구성) 위원의 1/2 이상을 재정전문가·시민단체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
  -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심의 시 토론을 통한 실질적 자문이 가능하도록 최소 1회 이상은 대면심의 방식으로 운영

### ③ 【지방의회 및 행정자치부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
  - 각 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15.12.2)까지 e호조 시스템을 통해 행정자치부에 송신
- 지방의회는 예산안 심의자료로 활용
  - 향후 재정운용 목표, 자원배분 방향 및 성과지표 등 계획적 재정운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

## 1. 대·내외 경제 전망<sup>1)</sup>

### □ 세계 경제

- 세계경제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 흐름이 지속 되겠으며, EU의 미약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선진국은 2%대 성장을 지속할 전망
  - 신흥국 경제도 개선세가 전망되나,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라 성장 속도는 과거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
- 다만,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유가하락에 따른 산유국 경제 불안 등은 잠재적 위험요인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IMF, '15.1월 >

(단위 :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세계	3.3	3.5	3.7	4.1	4.0
- 선진국	1.8	2.4	2.4	2.4	2.3
- 신흥국	4.4	4.3	4.7	5.2	5.2

1)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분야 공개토론회 자료('14.6)



## □ 국내 경제 전망

-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 및 정책 성과 가시화에 따라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될 전망
  - 다만, 선진국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등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세입여건은 완만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세입 여건은 다소 개선되나 일부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
  - 최근 세수실적 부진 흐름, 낮은 물가상승세 등이 안정적 세입확보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
- 세출여건은 인구구조 변화 및 복지제도 성장으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국정과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투자 소요도 증대
  - 보육인프라 확충, 아동돌봄 서비스 지원 등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에 따른 연금, 의료 등 의무지출 소요가 급속히 증가
  - 그간 추진해온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재정 투자 지속
- 수지·채무 측면에서는 경기회복세 지연 등에 따른 세수부진으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
  - 통일 대비, 미래 위기 대응, 국가신인도 유지 등을 위한 재정건전성 강화의 필요성 증대되고
  - 지출 효율화 등 재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

## 2.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전략<sup>2)</sup>

### □ 재정운용 방향

- 최근 경기회복세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는 등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재정은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되,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
- 이를 위해 '15~'19 기간 중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예산안 편성과과정에서 검토
  - 총수입은 비과세·감면 정비, 세외수입 확충 등의 노력과 함께 재정 외로 운영중인 예산 외 수입의 재정체계 내 편입 등 추진
  - 총지출은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면서도 모든 재정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
- 한정된 재원여건을 감안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등 민간 유동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기를 보완
-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 아직까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나,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재정준칙 제도화\* 추진
    - \*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 검토
    - \*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Pay-go원칙(의무지출 정책추진시 재원확보 대책 사전 검토), 재량지출 제한, 조세감면 제한 등

2)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결과('15. 5. 기획재정부)

## □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복지·문화·안전분야 투자비중 확대
  - 세대·계층간 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 등으로 국민행복 시대를 뒷받침하고,
  - 재난취약지역 상시 안전점검, 신종인플루엔자·에볼라 등 새로운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 강화로 안전사회 구현
- SOC, 산업 등 민간역량 성숙분야는 민간역할을 확대하고 재정은 각 부처의 핵심역량을 중점 지원
  - SOC분야는 투자를 내실화하되, 위험공유형 등 새로운 민자 방식을 활용한 민간투자 활성화로 재정투자를 보완하고,
  - 주요국과의 FTA 확대에 따른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고부가 농어업 육성으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 □ 향후 재정개혁 추진

- 경제 활력 회복 지원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 정부·지방·공공기관 혁신, 민간참여 확대 등 전방위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하고
- 이러한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 내년도 예산편성 및 '15~'1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중소기업·청년 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적극 지원

### 3. 지방자치단체 세입 · 세출 여건

#### 1. 지방자치단체 세입 여건

□ 내수의 완만한 회복 등 국내경제의 안정적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도 개선 효과 등으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수입은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

○ (지방세)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 증가와 자산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지방소득세·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sup>3)</sup>되고,

- 지방소비세 인상(부가가치세의 6→11%), 지방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및 법인소득분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정비, 지방세 과세대상 추가\*,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시스템 구축('14~'16년) 및 지방세 감면 축소 등 제도개편은 지방세 증가 요인으로 작용

\* (취득세) 요트회원권,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 (담배소비세) 물담배, 머금은 담배 등 신종담배

- 부동산 거래량은 2012년 하락이후 2013년부터 회복세

#### < 부동산 거래량<sup>4)</sup>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토지 (필지)	2,071,257	2,329,199	2,044,9625	2,241,979	2,643,622	17.9%
아파트(동·호)	776,137	906,083	716,714	876,465	1,071,295	22.2%
건물 (동·호)	1,212,605	1,434,147	1,196,691	1,390,443	1,692,400	21.7%

- 부동산 가격은 '09년에 상승추세로 전환되어 완만하게 상승

\* 지가변동률<sup>5)</sup>(%) : ('10년)1.05% → ('11년) 1.17% → ('12년)0.96% → ('13년)1.14% → ('14년)1.93%

3) 중기 지방세수 추계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12.12, 한국지방세연구원)

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통계정보

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통계정보

○ (세외수입)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14.8.7)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소폭 상승요인 존재**

□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국세수입은 연평균 5.9%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 이전재원 수입도 영향** 받을 전망

○ (지방이전재원)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국세의 증가로 ‘14~’18년 기간 중 연평균 6.4% 증가 예상  
 - 단, 2014년 내국세 세입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정산분(△1.6조원)이 2016년에 감액 반영되는 점을 감안할 필요

**< 지방이전재원 전망<sup>6)</sup> >**

(단위: 조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 지방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76.6	74.2	85.3	91.3	98.1	6.4

○ (국고보조금)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에 따라 복지지출 분야, 안전 분야, 중소기업 지원 분야 등 **보조금 증가 요인 상존**

□ 지방채 발행규모는 당분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할** 전망

○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하여 조기상환, 채무관리 목표제 등 지방채무 건전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

**< 지방채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방채 발행액	85,338	60,015	43,097	43,718	<b>82,008</b>
지방채 잔액 (증감율)	255,531 (34.1%)	285,491 (11.7%)	277,152 (△2.9%)	267,559 (△3.7%)	<b>261,497</b> (△2.3%)

6)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참고1** 시·도별 부동산 거래량 (국토교통부)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5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전 국	토지(필지)	2,329,199	2,044,962	2,241,979	2,643,622	1,251,200	18.14%
	아파트(동·호)	906,083	716,714	876,465	1,071,295	522,033	24.89%
	건물(동·호)	1,434,147	1,193,691	1,390,443	1,692,400	825,759	24.50%
서 울	토 지	194,929	159,697	200,207	262,318	142,799	40.03%
	아파트	80,537	60,840	91,017	12,4778	65,781	34.34%
	건 물	183,334	151,169	192,289	251,753	138,168	40.51%
부 산	토 지	146,329	119,125	143,232	173,576	85,786	29.30%
	아파트	81,486	57,250	78,962	94,997	47,314	35.14%
	건 물	131,429	104,711	127,221	151,904	75,891	31.82%
대 구	토 지	92,314	86,068	103,760	112,073	51,946	8.02%
	아파트	61,077	54,826	68,502	68,031	32,416	7.48%
	건 물	80,206	73,959	90,604	96,504	46,011	11.70%
인 천	토 지	110,220	92,407	94,158	115,716	52,733	14.47%
	아파트	54,511	45,767	48,244	60,455	27,152	14.98%
	건 물	94,615	77,962	81,565	100,573	45,829	15.01%
광 주	토 지	64,199	55,784	63,617	76,905	36,534	22.57%
	아파트	42,936	33,483	42,039	52,865	25,338	26.65%
	건 물	54,793	46,196	54,777	67,097	31,904	23.64%
대 전	토 지	63,942	42,379	46,666	54,630	21,145	-9.06%
	아파트	42,638	27,135	29,737	36,067	13,168	-14.34%
	건 물	57,628	37,632	41,691	48,539	18,471	-10.07%
울 산	토 지	57,786	49,957	59,021	69,052	30,562	12.48%
	아파트	33,310	27,055	35,110	40,591	18,214	8.81%
	건 물	42,280	35,998	43,840	51,788	22,915	8.41%
세 종	토 지	-	9,699	16,350	25,765	20,341	120.16%
	아파트	-	5,832	7,240	15,339	15,495	203.29%
	건 물	-	6,965	9,083	19,461	18,276	192.23%

※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 '14(1월~5월)대비 '15(1월~5월) 증감률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5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경 기	토 지	467,679	400,636	449,235	549,132	274,895	26.35%
	아파트	198,617	153,669	198,642	237,060	126,057	33.87%
	건 물	316,563	256,360	311,785	386,050	200,239	29.70%
강 원	토 지	120,381	108,695	104,675	115,604	46,370	3.23%
	아파트	29,281	23,640	25,314	32,094	11,348	-4.08%
	건 물	50,790	44,157	43,116	49,749	18,937	1.21%
충 북	토 지	102,896	94,515	94,768	106,349	42,696	0.45%
	아파트	31,493	27,090	28,555	33,359	12,806	-0.19%
	건 물	47,787	41,802	43,873	51,412	19,736	2.42%
충 남	토 지	164,013	149,012	142,790	164,773	72,417	12.44%
	아파트	54,524	45,059	40,842	53,824	21,771	19.02%
	건 물	72,938	63,503	58,677	74,267	30,595	17.57%
전 북	토 지	131,235	116,954	121,323	130,202	55,364	2.05%
	아파트	39,471	26,502	28,176	35,797	16,330	29.52%
	건 물	55,639	41,884	45,152	52,816	23,575	22.09%
전 남	토 지	156,326	142,884	140,722	151,806	70,287	8.34%
	아파트	31,868	25,677	25,118	27,301	13,817	22.69%
	건 물	48,489	41,454	41,984	47,502	22,445	20.42%
경 북	토 지	213,938	190,705	203,683	228,753	110,847	17.09%
	아파트	51,995	39,136	46,717	54,971	32,554	63.61%
	건 물	78,693	66,494	75,848	88,616	47,003	39.43%
경 남	토 지	207,371	188,317	212,660	247,601	107,816	6.58%
	아파트	66,251	57,974	75,726	96,783	39,335	0.19%
	건 물	103,625	87,341	109,928	133,204	55,544	2.79%
제 주	토 지	35,641	38,128	45,112	59,367	28,662	25.64%
	아파트	6,088	5,779	6,524	6,983	3,137	9.19%
	건 물	15,338	16,104	19,010	21,165	10,220	20.09%

※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 '14(1월~5월)대비 '15(1월~5월) 증감률

**참고2 시도별 자가변동률 (국토교통부)**

(단위 :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 국	1.05	1.17	0.96	1.14	<b>1.96</b>
서 울	0.53	0.97	0.38	1.21	<b>2.66</b>
부 산	1.22	1.58	1.73	1.57	<b>2.28</b>
대 구	1.40	1.40	1.58	1.68	<b>3.15</b>
인 천	1.43	0.66	0.46	0.87	<b>1.35</b>
광 주	0.67	0.75	1.15	0.75	<b>1.31</b>
대 전	1.55	1.47	1.25	1.01	<b>1.84</b>
울 산	0.74	1.09	1.65	1.37	<b>1.85</b>
세 종			3.19	5.50	<b>4.53</b>
경 기	1.49	1.47	1.04	0.91	<b>1.24</b>
강 원	0.84	1.42	1.79	1.29	<b>1.76</b>
충 북	0.65	0.59	1.09	1.02	<b>1.69</b>
충 남	1.16	0.76	0.88	0.78	<b>1.39</b>
전 북	0.66	0.77	1.43	1.04	<b>1.58</b>
전 남	1.13	0.95	1.35	0.96	<b>1.80</b>
경 북	1.14	1.11	1.40	1.49	<b>2.42</b>
경 남	1.29	1.63	1.67	1.49	<b>1.97</b>
제 주	1.07	0.92	1.25	1.42	<b>3.73</b>



### 참고3 지역내 총생산(GRDP) 및 실질성장률 현황 (통계청)

(단위 : 십억원, ( )는 실질성장률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 국	1,151,367 (2.4)	1,265,146 (0.7)	1,330,888 (6.6)	1,377,041 (3.5)	1,430,255 (2.3)
서 울	273,199 (1.7)	289,719 (0.8)	303,813 (3.0)	313,479 (3.0)	318,607 (2.0)
부 산	60,695 (1.7)	63,737 (-3.6)	66,648 (4.5)	67,999 (2.0)	70,338 (3.0)
대 구	36,017 (0.7)	38,580 (-2.8)	41,448 (7.1)	43,021 (3.4)	44,754 (2.7)
인 천	53,796 (-0.7)	60,708 (-1.9)	61,854 (10.7)	62,208 (1.6)	64,654 (0.7)
광 주	23,834 (0.7)	26,401 (0.5)	27,789 (7.7)	28,914 (3.7)	29,763 (1.0)
대 전	25,535 (0.9)	27,632 (2.2)	29,684 (6.6)	30,884 (3.9)	31,456 (1.2)
울 산	52,556 (-1.9)	62,852 (-1.2)	68,748 (4.7)	70,783 (6.5)	68,348 (2.1)
경 기	237,319 (4.6)	266,562 (1.2)	276,155 (9.7)	288,147 (3.6)	313,671 (2.9)
강 원	29,111 (2.2)	30,628 (0.5)	32,438 (4.0)	33,853 (3.5)	35,357 (1.5)
충 북	34,837 (-0.1)	39,470 (5.0)	42,489 (8.2)	43,628 (6.2)	47,402 (2.0)
충 남	71,756 (4.9)	83,167 (2.2)	91,816 (11.8)	95,308 (6.8)	99,154 (3.6)
전 북	34,739 (2.8)	36,632 (0.8)	39,960 (4.8)	40,432 (3.3)	42,513 (-0.1)
전 남	51,544 (1.2)	59,901 (0.1)	62,689 (7.6)	64,642 (1.5)	62,289 (3.8)
경 북	72,973 (2.8)	80,839 (-0.5)	82,276 (6.7)	85,401 (1.8)	89,132 (3.2)
경 남	83,163 (5.5)	87,419 (3.9)	91,233 (4.8)	95,635 (2.7)	99,619 (0.9)
제 주	10,296 (0.7)	10,899 (6.1)	11,847 (2.3)	12,707 (5.1)	13,198 (5.2)

## 참고4

## 지방채무 건전관리방안 (‘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 ◇ 기본방침

-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지방채 운용의 계획화
- 실효성 있는 채무관리 대책 추진
- 투자의 효과성을 감안한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의 책임성 확보
- 조달자금의 적정 선정 및 부적합 지방채발행 제한

### ◇ 주요과제

주요과제	세부 추진계획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지방채 운용의 계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li> <li>○ 연도 중 불가피한 사업 외 지방채 추가분 발행은 억제</li> <li>○ 일반재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채발행 지양</li> </ul>
실효성 있는 채무관리 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BTL사업의 임대료를 포함한 채무와 경상 일반재원을 기준으로 한도액 산정</li> <li>○ 채무관리계획은 향후 5개년에 대한 채무전망 등에 대해 내실있게 수립하고, 이를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li> <li>○ 잠재·우발 재정위험 관리를 위해 보증채무 등 우발채무에 대한 관리계획을 채무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추진하고, 한도액 산정시 우발채무(50%) 반영</li> </ul>
투자의 효과성을 감안한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의 책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융자심사대상 이상의 사업만 지방채 발행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융자심사 시 자원조달계획상 지방채차입 계획이 있는 사업</li> </ul> </li> <li>○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마무리가 시급한 계속사업 위주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억제</li> </ul> </li> <li>○ 정부시책 및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업은 적극 검토</li> </ul>
조달자금의 적정 선정 및 부적합 지방채발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입기간, 사업성격, 투자효과 등을 감안하여 차입선 적정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투자사업은 정부자금 또는 장기저리자금 확보 노력</li> </ul> </li> <li>○ 채무과다 및 재정운용 부실단체는 한도액 초과 발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 채무관리로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li> </ul> </li> </ul>

## 2. 지방자치단체 세출 여건

- 복지제도 개편 및 사회복지인력 충원, 소방인력 및 장비 확충, 국고보조율 인하 등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지속 증가 예상
- '14년 기초연금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15년 기초생보 맞춤형 급여 개편 등 복지제도 변경으로 인해 지방 부담 증가
  - ※ 기초연금의 경우 향후 지방비 급증 예상('20년 4.4조원, '40년 35.5조원)
- 정부 대책으로 복지인력 약 7,400명 순증('11~'17년), 국가는 채용시기 부터 3년간만 인건비 일부 보조
  - ※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11.7)」,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14.10)」 : ('11~'14년) 3,340명, ('14년) 1,117명, ('15~'17년) 2,880명
- 소방인력 및 장비 확충과 관련하여, 지방 부담 소요 예상
  - ※ 당·정·청 협의('14.8) : 소방인력 5년간 9,141명 증원, 소방장비 3년간 확충  
→ '15년 소방장비 국비에산 0.1조원만 반영, 소방안전교부세 신설('15년 0.3조원)
- '14년 국가예산 편성 시 26개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인하로 지방 부담 증가

### < 2015~2017년 자치단체 재정부담 증가 전망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9조원	3조원	3.5조원
▫ 주요 복지제도 변경	1.8조원	1.9조원	2.2조원
▫ 사회복지인력 확충	0.37조원	0.37조원	0.37조원
▫ 소방인력 및 장비 확충	0.48조원	0.51조원	0.6조원
▫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인하	0.26조원	0.24조원	0.33조원

## 1. 기본방향

-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국가정책방향 하에서 자치단체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수립
- 자치단체 중·장기 발전계획과 충실히 연계
  - 자치단체의 종합발전계획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의 자치단체 자구노력 강화
  -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
- 주민, 지방의회, 관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감사원, 언론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수립

## 2. 대상 및 작성기준

□ 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작성기준

○ (‘16년도)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15년도 최종 예산을 기초로 작성

※ 지방재정법 개정(‘14.5.28 공포)으로 계획수립 기간이 “당해”회계연도에서 “다음”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로 변경

○ (‘17년도 이후) ‘16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지역내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

-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분야별 지출총액을 기초로 작성하되, ‘16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부 가감 조정

\* 한 분야가 여러 국·과에 걸쳐 있는 경우는 부서별 총액을 토대로 작성

- 변동요인이 없는 사업은 가급적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투자계획을 유지하여 작성

-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이후 법령 제·개정, 국고보조사업 수요 조정 등이 있거나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 계획을 조정하여 반영

\* 투자계획 조정 시, 투자계획 조정사유를 명확히 부기

### 3. 2016~2020년 수립기준 변경 사항

□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구분** (제3항 제6호, 2015년 작성부터 적용)

○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추가

- (의무지출)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지방재정법 (제33조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등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 (재량지출) 의무지출 외의 모든 지출(법 제33조제3항제6호)

※ 구체적 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별도 기준마련 후 2015년부터 작성

※ 국가는 2010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부터 재정지출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로 구분

○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에 대한 작성방법은 세부작성 내용(작성방법 및 서식 등)을 참고하여 작성

□ **지역통합재정통계 추가** (제3항 제7호, 2015년 작성부터 적용)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및 기금,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통합한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의 전망(총계기준으로 작성)

※ 순계기준은 2016년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작성

- 작성주체 : 시도·시군구 예산담당부서
  - 작성협조 : 시도교육청,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고시된 출자출연기관 전체
- 작성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청 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
- ‘지역통합재정통계’에 대한 작성방법은 세부작성 내용(작성방법 및 서식 등)을 참고하여 작성

□ **추경 사업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 강화**

-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 미 반영된 추가 국고보조, 공모사업 등 신규 사업은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 **시도 교육특별회계와 연계강화**

- 시·도지사과 교육감이 사전 협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법정전입금(지방교육세, 시도세, 담배소비세), 비법정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학교급식비, 누리과정비 등

## 4. 세부 작성내용

### 2016~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목차 예시)

- I.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 1. 제도의 의의
  - 2. 계획수립 체계
- II. 중기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
  - 1. 일반현황
  - 2. 경제·사회 여건과 전망
  - 3. 중기 세입·세출 여건과 전망
- III. 재정운용 목표 및 자원배분 방향
  - 1.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
  - 2. 중기재정운용 목표
  - 3. 자원배분 방향
- IV. 중기재정계획 총괄
  - 1. 세입·세출계획
  - 2. 채무 전망 및 관리계획
  - 3.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 4. 회계별 계획
  - 5. 분야별 계획
  - 6.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 7. 지역통합재정통계
- V.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 1. 일반행정
    - (1) 정책방향
    - (2) 투자계획
  - 2. 공공질서 및 안전
    - (1) 정책방향
    - (2) 투자계획
  - ...

- ※ 붙임 : 1. 분야별 세부사업 계획서  
2. 중기 채무 전망



# 1. 중기세입 전망

## 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

- (총괄)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참조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pm 2\%$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전망치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 예) 부동산경기가 살아나 거래세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담배값 인상에 따라 연간 담배소비량 10% 감소 예측 등
- (지방세) 최근 5년간 징수실적을 기초로 하되, 제도 변경 및 부동산 거래동향 등 자치단체 세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한 세수추계기법 등 활용
  - 산식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거시경제지표 전망치, 과거 추이 등을 활용하여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 최근 세제개편 주요내용 >

- 지방소비세를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6%에서 11%로 인상('14.1.1~)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및 법인소득분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정비('15.1.1~)
- 지역자원시설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과세강화(2배 → 3배 증가, '14.1.1~)
-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 ('13.8.28~)
  - 6억원 이하 4%→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4%→2%, 9억원 초과 4%→3%
- 등록면허세 정액분 세율 인상 ('14.1.1~)
  - (등록분) 1만원 이하 100%, 1만원 ~ 5만원 75%, 5만원 초과 50% 인상
  - (면허분) 각 종별 50% 일괄 세율 인상
-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 과세대상 추가('14.1.1~)
  - (취득세) 요트회원권,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 (담배소비세) 물담배, 머금은 담배 등 신종담배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세율 인상('15.1.1~)
  - 원자력발전(0.5 → 1원/kwh), 화력발전(0.15 → 0.3원/kwh)
- 담배소비세제 개편(담배소비세율 641원/갑 → 1,007원/갑)
- 지방세 감면 정비 지속 추진 등

- (세외수입)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세외수입 실무편람」, 「지방세외수입연감」 등 활용
  -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15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계상
  -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 \* 예) 재산매각수입(00계획에 의거한 매각계획)
    - ※ '14년 예산편성 기준 개정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의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금및예수금, 융자금원금수입은 “내부거래 및 보전수입”으로 지방세외수입에서 제외되었음

## ② 이전재원 추계

- (총괄) 최근 이전재원 확보 실적, 국가경제 전망 및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고려
  - 각 재원별 연평균 증가율이 지난 5년간 중앙정부 지원금 연평균 증가율  $\pm 1\%$ 를 초과하는 경우 전망치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교부세)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의 연도별 지방교부세 규모 및 각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수입 증감 등을 감안하여 편성
- (보조금) 최근 5년간의 보조금 확보 실적 및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참조
  - 신규사업의 경우 해당사업 또는 유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등을 감안하여 과다 추계되지 않도록 주의
    - \* 예산심의를 거친 국고보조사업 목록 및 보조율은 10월 중순경 내시 예정

## ③ 지방채 발행계획

- 지방채 증권, 차입금 등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을 세입 전망에 포함하여 작성

**참고 2010~2014년도 시도별 최종예산 증가율**

단체별	연도별 최종예산(억원, 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					증가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0~'14년
합 계	1,978,976	2,061,155	2,230,552	2,358,517	2,436,706	5.3%
서울	306,251	296,176	317,225	340,537	359,926	4.1%
부산	117,523	119,263	124,996	136,677	140,490	4.6%
대구	75,267	76,805	82,603	93,945	93,739	5.6%
인천	98,915	99,174	107,422	119,814	120,321	5.0%
광주	44,056	49,371	51,618	56,105	59,110	7.6%
대전	42,492	47,230	49,976	54,218	56,716	7.5%
울산	33,506	37,146	41,758	44,117	47,613	9.2%
세 종	-	-	3,123	7,285	10,591	-
경기	368,501	387,541	437,338	435,688	457,461	5.6%
강원	98,813	102,919	108,927	121,264	119,247	4.8%
충북	78,902	84,262	89,324	97,300	100,904	6.3%
충남	116,460	123,392	130,267	131,923	137,987	4.3%
전북	105,716	116,487	120,526	130,401	133,421	6.0%
전남	143,179	150,121	164,772	163,147	165,877	3.7%
경북	162,277	172,681	189,416	198,420	201,553	5.6%
경남	158,552	168,096	176,933	188,903	192,218	4.9%
제주	28,566	30,492	34,326	38,773	39,531	8.5%

---

## 2.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자원배분 방향

---

### ①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

-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별 비전과 발전전략, 종합발전계획, 역점시책 등과 연계하여 5년간의 재정운용 기본방향 설정

### ② 중기재정운용 목표

- 사후적으로 재정계획이 제대로 실현되었는지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
- 세입규모 및 재정지출 규모, 채무관리 수준, 재정수지 등
  - 세입규모 및 지출규모 : 연평균 ○○% 증가 등
  - 채무수준 : GRDP 대비 ○○%, 예산규모 대비 ○○%, 사업예산규모 대비 ○○% 등
  - 재정수지 : 재정수지 ○○% 이하 유지

### ③ 자원배분 방향

- 이전재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 중앙정부의 자원배분 방향을 적극 참고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 예시) 국토·지역개발 분야의 재정투자는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사회복지·보건분야 확대(보육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등)
- 계획기간 중 분야별 자원배분 규모 및 자원배분 구조의 변화를 표, 그래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작성
  - 분야별 목표(5년후 미래상) 및 주요 성과지표 제시
  - \* 예) 산업·중소기업 분야 :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을 통한 외국인 기업 유치, 외국인 투자 '15년 00만달러 → '19년 00만달러

---

### 3. 중기재정계획 총괄

---

#### ① 세입·세출 총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계획 총괄(표) 및 세입재원별, 회계별, 분야별, 연도별 내역의 개괄 작성

※ 재원별·회계별·분야별 비중·연평균 증감률 등을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 등

#### ② 채무 전망 및 관리계획

- 계획기간 중 부족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연도별 채무의 증감 및 주요 요인(사업), 채무관리계획 등 작성
-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행위는 포괄하여 중기채무전망에 반영하고, 단위사업계획서 등을 참고자료로 첨부
- BTL 사업의 경우,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장래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요인이 되므로 동일하게 적용

#### ③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 최근 3년의 통합재정수지를 기초로 향후 5년간의 수지 전망
  - (개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자치단체의 1년간 순수한 재정활동으로 순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
  - (산정식) 순수입 - {순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산정방법) 통합재정수지 산정 각 항목의 최근 3년간 추세 및 계획기간 중 세입·세출 전망치 등을 참조하여 작성

※ 통합재정수지 산정 각 항목(①~⑥)의 최근 3년간 추세 등을 기초로 향후 5년간 예측 값을 e호조상 표에 입력하면 연도별 통합재정수지 자동계산

### <통합재정수지 작성 서식>

구 분	2013년 (최종예산)	2014년 (최종예산)	2015년 (당초예산)	중기 전망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① 통합재정규모								
② 순수입								
③ 순지출								
④ 용자지출(a)								
⑤ 용자회수(b)								
⑥ 순용자(c=a-b)								
<b>통합재정수지</b>								

주) 각 항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공기업), 기금의 합계이며 순세계잉여금 포함, 개별 자치단체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수치

- (관리방안) : 연도별 전망치에 대한 설명 및 관리·개선방안 등
  - 수지가 적자거나 연도간 변화가 큰 경우 등은 원인과 관리 및 개선방안 등을 설명

#### 4] 회계별 계획

-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의 총괄계획 및 각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별 중기재정운용 방향 및 세입·세출 계획 작성, 개략적인 설명 등
  - 중기계획 작성 서식 ‘2. 일반회계~ 6-1. ○○○기금’ 서식을 참조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모든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계획 작성

#### 5] 분야별 계획

- 분야별 투자계획 총괄표 및 분야별 비중, 연도별 변화 등 개괄 작성 및 설명

## 6]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 1. 대상 및 작성기준

- (계획기간) 2016~2020년(5년)
-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분야 및 부문) 전체(정책사업-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
- (방법)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한 분야로 작성(e호조 시스템 연계)
- (중기지방재정계획 포함 내용)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 2. 의무·재량지출 규모 및 관리계획

#### (1) ○○○시 의무·재량지출 개요

##### (1-1) 의무지출 규모 및 산출내역

- '16~'20계획 의무지출규모는 ○○○억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
- 법정지출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 지원 등 연간 ○○○억원

#### < 의무지출 규모 및 내역 >

(단위 : 억원, %)

구 분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 의무지출 >						
(법정지출)						
(보조사업)						
(이자지출)						

※ 의무지출 = 법정지출 + 보조사업 + 이자지출

## (1-2) 재량지출 규모 및 산출내역

- '16~'20계획 재량지출 규모는 ○○○억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
- ☆☆부문은 ○○○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연평균 1,000억원 수준 지출규모 증가
- △△부문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출소요를 연평균 500억원 수준 감소

### < 재량지출 규모 및 내역 >

(단위 : 억원, %)

구 분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 재량지출 >						
【 ○○ 분야 】						
(△△ 부문)						
(△△ 부문)						

※ 재량지출 = 분야별 합계

## (2) 재량지출 관리계획(예시)

- '16~'20계획 재량지출은 ○○○ 수준 (연평균 증가율 ○○%)을 유지
- 재량지출 증가율 한도 설정 또는 재량지출 증가요인이 발생시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 마련 등
  - ○○○ 요인으로 인해 ☆☆사업소유가 연평균 1,000억원 수준 증가하였으나, 증액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의 연차별 투자규모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구조조정

## (3) e호조시스템 작성방법

-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총괄), 분야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식에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구분 표시
-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교육(2015.7.24.)내용 참고



## 7] 지역통합재정통계

### 1. 대상 및 작성기준

○ (계획기간) 2016~2020년(5년)

○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시도교육청,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의한 예산안 첨부서류중 제3항에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제출시기와 같이 제출

○ (방법) 총계기준

① 시도교육청,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붙임 서식에 따라 재정통계를 작성, 해당 자치단체 예산부서로 제출

② 시도·시군구 예산담당부서에서는 기초자료를 취합하여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하여 예산서 첨부서류로 의회 제출

※ 시도·시군구 관할지역 범위(17개시도, 226개 시군구)와 교육청 관할범위(177개 교육지원청)가 달라 시군구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함 통계 작성이 곤란하므로, 시도에서만 교육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

### 2. 전망과 근거

#### (1) 전망

○ '16~'20계획 지역통합재정통계 규모는 ○○○억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

○ ☆☆☆회계는 ○○○ 인인을 반영하기 위해 연평균 1,000억원 수준 지출규모 증가

- △△회계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출소요를 연평균 500억원 수준 감소

**<지역통합재정통계작성 서식>**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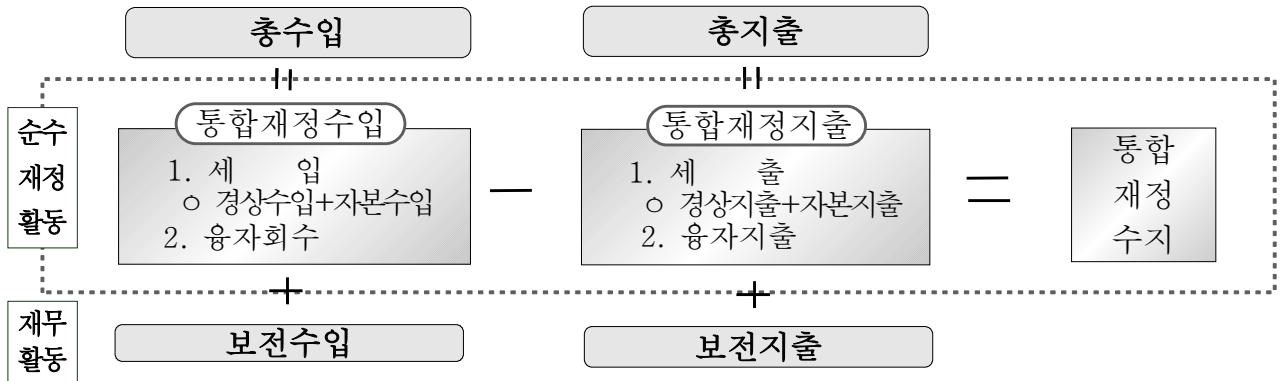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중기 전망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직영기업)						
교육청특별회계						
기 금						
일반지자체 기금						
교육청 기금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2) 근거

- '16~'20계획 지역통합재정통계 규모는 ○○○억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
  - ☆☆회계는 ○○○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연평균 1,000억원 수준 지출규모 증가
  - △△회계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출소요를 연평균 500억원 수준 감소
- ※ 교육청 특별회계 및 기금 000 교육청 작성자료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해당기관 작성자료 제출받아 작성

## 참고 통합재정수지 산정 체계 및 용어의 개념

### □ 통합재정 수지 산정 체계도



### □ 통합재정 체계상 용어의 개념 정리

- (총수입·총지출) 예산과 기금을 통합한 순계기준의 규모로서, 회계 간 내부거래와 자치단체 간 외부거래를 제외한 규모 (보전재원은 포함)
- (통합재정수입) 총수입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
  - \*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 + 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 자본수입 (재산매각수입) + 융자회수(융자·출자금회수)
  - \* (보전수입)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회수 등
- (통합재정지출)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
  - \* 경상지출(인건비, 물건비, 이자지급, 기타경상이전 지출) + 자본지출 (고정자산취득, 자본이전 등) + 융자지출 (융자·출자금 지출)
  - \* (보전지출) 지방채 원금상환, 예치금, 적립금, 국·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 (통합재정규모) 자치단체의 1년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 통합재정규모 = 세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융자금 회수는 재정활동의 감소요인이 되므로 융자지출에서 차감한 순융자만 계상
-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입 - 통합재정 지출
  - = (세입+융자회수) - (세출+융자지출)
  - = 세입 - 세출 및 순융자 (융자지출 - 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규모 / 통합재정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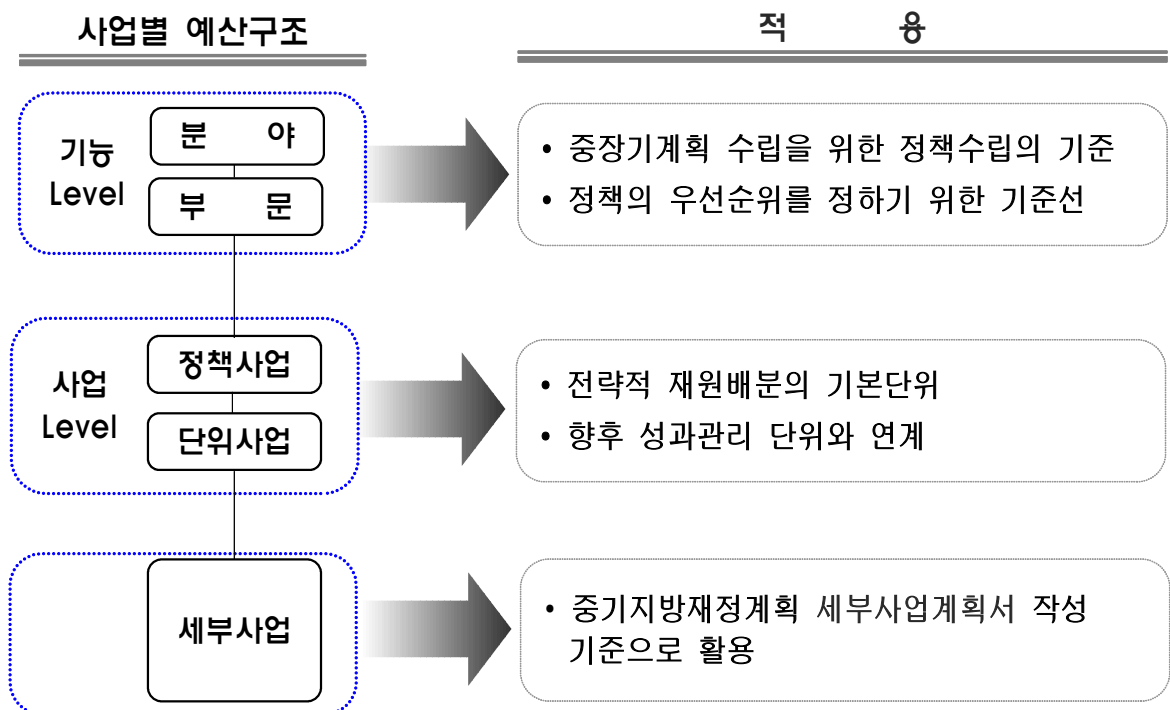
## 4.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 ① 기본 구성

- 정책방향 : 정책목표(5년 후), 중점 투자방향 및 성과지표
- 투자계획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단위로 기술

### ② 분야 분류체계

- 사업별 예산의 기능별 분류 체계 적용
  - 중장기 자원배분(중기재정계획), 단년도 예산편성(기능별 세출예산) 및 통합재정분석(지출 및 순융자의 기능별 분류)의 기능별 분류 체계를 일원화하여 지방예산제도 간 연계성 강화
- 사업예산(사업구조화)의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을 중기지방재정 계획 세부사업계획의 작성기준으로 활용



<b>참고</b>	<b>중기지방재정계획 기능별 분류체계</b>
-----------	--------------------------

13개 분야	52개 부문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14 재정·금융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16 일반행정
020 공공질서 및 안전	023 경찰 026 소방	025 재난방재·민방위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53 평생·직업교육	052 고등교육
060 문화 및 관광	061 문화예술 063 체육 065 문화 및 관광일반	062 관광 064 문화재
070 환경보호	071 상하수도·수질 073 대기 075 해양	072 폐기물 074 자연 076 환경보호일반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084 보육·가족 및 여성 086 노동 088 주택	082 취약계층지원 085 노인·청소년 087 보훈 089 사회복지일반
090 보건	091 보건의료	093 식품의약안전
100 농림해양수산	101 농업·농촌 103 해양수산·어촌	102 임업·산촌
110 산업·중소기업	111 산업금융지원 113 무역 및 투자유치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112 산업기술지원 114 산업진흥·고도화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120 수송 및 교통	121 도로 124 해운·항만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123 도시철도 125 항공·공항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41 수자원 143 산업단지	142 지역 및 도시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53 과학기술일반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60 예비비	161 예비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의 기능별 분류 설명서 참조

### ③ 세부사업계획

#### < 세부사업계획 작성대상 사업 기준 >

- 연도별 사업경비에는 사업예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이 중 사업예산에는 사업구조화상의 모든 사업을 포함
  - 중기지장재정계획중 ‘주요사업조서’ 작성에 포함될 사업은 이 중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함(단,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제외)
- ‘주요사업조서’ 작성 대상 주요사업 기준은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예산규모, 세부사업 수 등을 고려)

#### < 주요사업 조서 작성 기준(예시) >

- ◇ 광역자치단체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 기초자치단체
  - ‘15년 당초 예산 규모 3천억원 이상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 ‘15년 당초 예산 규모 3천억원 미만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 다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은 광역 5억, 기초 3억원 이상 (총사업비 기준)
- ◇ 외국차관 도입 사업, 해외투자 사업 및 다른 자치단체(광역은 광역, 기초는 기초)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은 광역 10억, 기초 5억 이상 (총사업비 기준)
- ◆ 총사업비 : 기투자 + 5개년계획(‘16~’20) + 향후 투자액이 모두 포함된 사업비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계획기간 내 사업비 합계)
  - 시도 : 국비\*\*시도비+지방채, 시군구 : 국비\*\*시도비+시군구비+지방채
  - \* 국비 : 국고보조, 지특, 국가기금 (연구기관 등에 직접 보조는 제외)
  - ※ 기타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은 부분별 현황 및 세부사업계획서상 ( )로 표기

### <세부사업계획 작성 방법>

- 세부사업계획은 분야·부문별로 사업예산(보조사업+자체사업)에 대해서 입력하되,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순으로 작성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경우 기투자, 향후 투자는 입력하지 않고 5개년 자료만 입력
    -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중 일부만 시행되는 사업도 입력대상에 포함
  
  - 교부세(보통, 특별, 부동산)는 자체사업으로 입력
    - 광역은 시도비, 기초는 시군구비로 입력
  
  - 보조금은 광역에서는 국고 / 자체사업(시군구에 대한 시도비 보조사업 포함)으로 입력, 기초에서는 국고 / 시도비 / 자체사업으로 입력
  
  - 국고에서 보조하는 BTL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 준하여 처리하고,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BTL 사업은 자체사업에 준하여 처리
    - 건설기간 중 민간 시설투자는 투자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임대기간(약정기간) 중 정부지급금을 연차별 투자액 및 향후 투자액으로 표시
- ※ 정부지급금 = 임대료 + 운영비
- (임대료) 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 매년 균등분할한 지급분
  - (운영비)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유지·보수비용 등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보전분

---

## 5. 추경사업과 재정계획 연계

---

### ① 기본방향

-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 등 추가로 확정되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경우 당해 연도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

### ② 작성방법

- 신규로 추경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중기계획 수립시 세부사업계획서 등의 기 투자 사업비에 반영하여 계획수립
- 신규로 반영할 사업에 대하여 분야별 사업계획서 및 세부 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
  - 분야별 사업계획서(총괄 및 추가사업내용, 붙임서식 참조)
  - 세부 사업계획서(총괄 및 추가사업내용, 붙임서식 참조)



## 5. 계획 수립 세부일정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마련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li> </ul>	'15년 8월
↓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사업조서 입력</li> <li>* 시스템 입력 사항은 지방재정정보화사업단과 협의</li> </ul>	8~9월
↓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li> </ul>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확정</li> <li>*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확정(10월 중순)</li> </ul>	9~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의회 및 행정자치부 제출</li> </ul>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 작성 및 의회제출(변경사항 발생시)</li> </ul>	'16. 1~12월
↓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li> </ul>	'16.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부처 협의</li> </ul>	2월
↓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 보고</li> <li>•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li> </ul>	3월

## ○ 행정자치부

- 「'16~'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통보('15. 8월)

## ○ 광역자치단체

- 행정자치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계획 수립
  - ※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미리 시·군·구에 시·도비 보조사업 목록을 코드화 하여 제공 가능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15.12.2)까지 e호조 시스템을 통해 행정자치부로 송신
  - ※ 광역단체에서는 관할 기초단체의 계획을 취합하여 광역본청분과 함께 행정자치부로 일괄 송부(종합계획의 국무회의 보고 일정('15.2~3월) 등을 고려해 기일 엄수)

## ○ 기초자치단체

- 행정자치부 및 시·도에서 시달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e호조 시스템을 통해 시도를 거쳐 행정자치부로 송신

## ○ 지방재정정보화사업단

- e호조 시스템 운영 및 자료 종합 분석( ~ '15. 12월)
- 자치단체가 시스템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협조

## &lt; 문의처 &gt;

◦ 시스템 관련 문의 : 지방재정정보화사업단(02-6918-1000)

## 참 고 자 료

### 참고 1. 중기지방재정계획 서식 / 39

- ① 중기 세입 전망
- ② 중기 자원배분 전망
- ③ 재정 계획
- ④ 연도별 지방채 잔액
- ⑤ 분야별 사업계획서

### 참고 2. 세출 기능별 분류체계 설명서 / 60

**참고 1**

**중기지방재정계획 서식**

**1 중기 세입 전망 (일반+특별+기금)**

**1.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중기 재정 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자체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									
임시적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보통									
부동산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 조정교부금 등은 종전의 재정보전금을 포함

\*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일부(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전입금, 예탁금원금·이자수입, 예수금수입 등)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분류

## 2. 지방세 수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보 통 세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목 적 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과년도 수입									

\* <비고>란에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기재

### 3. 세외수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부 담 금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 수입									
과년도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과목 변경

#### 4.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잉여금									
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예치금회수									
전입금									
예탁금및예수금									

\*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일부과목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과목으로 변경

## 2] 중기 자원배분 전망 (일반+특별+기금)

### 1. 회계별 자원 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 기 업	소 계							
	상 수 도							
	하 수 도							
	}							
기 타 특 별 회 계	소 계							
	의 료 급 여							
	공 업 용 지							
	중소기업육성							
	수 질 개 선							
	}							
기 금	소 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금							
	}							



## 2. 분야·부문별 자원 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소방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및관광일반								
}								

### ③ 재정 계획 (일반+특별+기금)

#### 1.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중기 재정 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입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③ 투자비용재원 (①-②)									
④ 사업수요									
⑤ 부족재원(④-③)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

## 2. 일반 회계

○ 중기재정운용 방향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비용재원 (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

### 3.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가능재원(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

## 4.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

#### 4-1. ○○○○ 특별회계

○ 중기재정운용 방향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비용재원 (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

## 5. 기타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비용재원 (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

## 5-1. ○○○○ 특별회계

○ 중기재정운용 방향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비용재원 (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



## 6. 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비용재원 (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

## 6-1. ○○○○ 기금

○ 중기재정운용 방향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비용재원(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

#### 4 연도별 지방채 잔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14년말 잔 액	'15년말 예상잔액 <sup>4</sup>	지방채 발행 계획					증가율	비 고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채 잔액 <sup>1</sup>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sup>2</sup>									
지방채 상환계획 <sup>3</sup>									
추가발행 계획	1. 일반회계								
	2. 기타특별회계								
	2-1. ○○○ 특별회계								
	...								
	3. 공기업특별회계								
	3-1. ○○○ 특별회계								
	...								
	4. 기금								
	4-1. ○○○기금								
	...								
상환 계획	1. 일반회계								
	2. 기타특별회계								
	2-1. ○○○ 특별회계								
	...								
	3. 공기업특별회계								
	3-1. ○○○ 특별회계								
	...								
	4. 기금								
	4-1. ○○○기금								
	...								

1. 지방채 잔액 = 전년도 지방채 잔액 + 지방채 추가발행액 - 지방채 상환액

2. 지방채 발행계획은 p45의 지방채 발행 액수를 기재

3. 지방채 상환 계획은 p45의 “보전지출” 중 차입금 원금 상환 액수를 기재

4. '14년도말 예상되는 지방채 잔액(추정)을 기재

## 수 분야별 사업계획서

### 중기지방재정계획('16~'20) 부문별 현황(총괄)

회계구분 : 일반+특별+기금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
총괄	37	100	계									
			의무									
			재량									
			국고보조									
			지특보조									
			기금보조									
			시·도비									
			지방채									
			(채무부담) (민자등)									
(010)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	1	18.9	계									
			의무									
			재량									
			국고보조									
			지특보조									
			기금보조									
			시·도비									
			지방채									
			(채무부담) (민자등)									

회계구분 : 일반+특별+기금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	건수	비율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향 후
(016) 일반행정 및 입법등 기타 } }	17	48.5	계									
			의무									
			재량									
			국 고 보 조									
			지 특 보 조									
			기 금 보 조									
			시 · 도 비									
			지 방 채									
			(채무부담)									
			(민자 등)									

※ 예산내의 범위에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자치단체는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을 부족재원에 포함하지 않고 ( )로 표기

## 세부 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6년(회계구분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정책·단위·세부사업	사업개요	국가 계획	투자 심사	지방 채	BTL	의무지출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법 정	보 조	이 자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향 후		
총 괄									계											
									의무											
									재량											
									국 고 보 조											
									지 특 보 조											
									기 금 보 조											
									시 · 도 비											
									지 방 채 (채무부담)											
									(민자 등)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지역정보화추진																				
컴퓨터무상지원																				
정보화교육추진	기간:2012~2016 대상:저소득층 규모:00명또는00대 내용:저소득주민정보화교육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계											
									의무											
									재량											
									국 고 보 조											
									지 특 보 조											
									기 금 보 조											
									시 · 도 비											
									지 방 채 (채무부담)											
									(민자 등)											
일반행정 비대상사업																				

분야·부문·별·정책·단위·세부사업	사업개요	국가 계획	투자 심사	지방 채	BTL	의무지출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법 정	보 조	이 자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역정보화추진																	
농어촌지역 초고속망구축									계								
									의무								
									재량								
기간:2015~2019 대상:5개시군 규모:2008마을 내용:농어촌인터넷망구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처 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국 고 보 조								
									지 특 보 조								
									기 금 보 조								
									시 · 도 비								
									지 방 채								
									(채무부담)								
									(민자 등)								

※ “국가계획”은 각 부처 중기사업계획에 포함되어 국비보조 가내시된 사업인 경우 체크하고 부처명은 해당부처의 코드번호 입력

※ “투자심사”, “지방채”, “BTL”은 해당여부를 체크

※ 예산내의 범위에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자치단체는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을 부족재원에 포함하지 않고 ( )로 표기

## 중기계획 작성시 참고사항

### □ 중기계획 신장 추이

-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최근 5개년의 증가율만큼 중기계획 수립(참고)

### □ 서식의 단위

- 세입·세출 등록은 천원 단위로 입력하며, 출력물은 백만원 단위로 출력

### □ 투자가용재원의 판단 기준

- 세입 - 경상지출(행정운영비+재무활동비+예비비)

###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규모 : '16~'20년 합계를 5년으로 나누어 결과치 산출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최초연도)<sup>1/(연평균 증가율을 구하려는 기간-1)</sup>-1

\* 증가율 소수점 1자리까지 적용

예시)

(단위 : 조원 / %)

연 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금 액	79.5	84.4	88.8	94.5	100.5	447.7	6.0%
증가율	(6.2)	(5.2)	(6.4)	(6.3)			

⇒ (100.5 / 79.5) ^ (1/(5-1)) -1 = 6.04%(연평균 증가율)

### □ 부족재원

- 예산 범위 내의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자치단체는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은 합계에 포함되지 않고 ( )로 표기
- 예산외의 범위를 포함하는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자체단체는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의 재원은 부족재원에 포함

### □ 세부사업 계획서

- 국가계획 여부 및 부처명(코드), 투자심사대상 및 지방채발행사업 여부, BTL사업인지를 반드시 확인·표시



### □ 시스템 입력부터 확정까지 처리 방법

- ① '재정계획' 메뉴의 '사업예산구조화'(정책/단위/세부사업 등록 후) 화면에서 「합의요청 처리 및 합의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 ②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세입중기지방재정계획등록' 화면에서 세입목별 추계를 등록하되, 순계처리를 위해 내부거래 대상 세입목 추가 입력(p.59 내부거래 순계처리과목 참조)
-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세출중기지방재정계획등록' 화면에서 세입과 마찬가지로 내부거래 대상 통계목별 자료 추가 입력 후 제출 처리
  - ※ 세입이 존재하는 부서의 경우 '세입중기재정계획등록' 화면에서 세입추계 등록 후 제출요청
- ④ 중기지방재정계획 담당자는 '중기재정계획등록승인' 화면에서 제출 요청된 세입 및 세출의 제출확인 처리 후 중기차수를 생성
- ⑤ '세입 및 세출중기재정계획조정'에서 생성된 중기재정계획 차수에 대해 조정 처리 및 조정 처리 후 **중기 통합재정수지 자료 입력**
  - ※ 추가 제출된 사업 및 세입목에 대해서는 변경세입 / 변경사업으로 해당 중기재정 계획차수에 추가 반영하여 조정 가능함
- ⑥ '중기재정계획확정' 화면에서 **세입과 세출 금액이 각 회계별로 동일하면 중기재정계획차수 완료**가 가능하므로 **완료 후 확정 처리**
  - ※ 단, 확정은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한번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⑦ '중기재정계획서관리' 메뉴에서 중기재정계획서 1장, 2장, 5장의 파일을 저장하고, 3장과 4장은 출력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중기 책자에 삽입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을 행정자치부로 송신

- ① '중기재정계획확정' 화면에서 확정처리하면 송신버튼이 나타남
- ② 송신버튼을 누르면 확정된 중기재정계획정보가 행정자치부로 송신됨  
(기초자치단체는 광역단체로 송신)

□ 중기지방재정계획 등록 승인시 주의사항

- 조회 후 차수생성 이전에 반드시 화면하단의 '제출확인' 버튼을 먼저 클릭
- '제출확인'시 회계구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선택
- 재원의 확인을 위해 각 자치단체 기준정보 담당자는 해당 회계년도의 재원에 대해 최종재원이 표준재원과 모두 연결되도록 처리

□ 기준규모 이상 사업의 행정자치부 제출 (e호조 등)

- 시도종합계획 및 전국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송신되는 자료는 중기지방 재정계획 확정된 모든 자료가 송신됨

• 순계처리과목

내부거래

거래유형	주는 회계(세출)		받는 회계(세입)		
	세출 중복거래대응과목	대상 회계	대상 기관	대상 회계	세입 중복거래대응과목
전 입 금 전 출 금	70101 기타회계전출금 70102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70103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일반/기타 /공기업	전체	일반/기타/ 공기업	701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72103 기타회계전입금
예 수 금 예 탁 금	70400 예탁금	일반/기타	전체	일반/기타	72201 예수금수입 72202 지역개발기금 시도예수금수입
예탁금상환 예수금상환	70501 예수금원금상환 70502 예수금이자상환 70503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상환 70504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이자상환	일반/기타	전체	일반/기타	72203 예탁금 상환금 72204 예탁금 이자수입

**참고 2**

**세출기능별 분류체계 설명서**

13분야 52부문					
분야	부문	명칭	분야	부문	명칭
010		<b>일반공공행정</b>	090		<b>보건</b>
	011	입법및선거관리		091	보건의료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93	식품의약안전	
	014	재정·금융			
	016	일반행정	100		<b>농림해양수산</b>
				101	농업·농촌
020		<b>공공질서및안전</b>		102	임업·산촌
	023	경찰		103	해양수산·어촌
	025	재난방재·민방위			
	026	<b>소방</b>	110		<b>산업·중소기업</b>
050		<b>교육</b>		111	산업금융지원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112	산업기술지원
	052	고등교육		113	무역및투자유치
	053	평생·직업교육		114	산업진흥·고도화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060		<b>문화및관광</b>	120		<b>수송및교통</b>
	061	문화예술		121	도로
	062	관광		123	도시철도
	063	체육		124	해운·항만
	064	문화재		125	항공·공항
	065	문화및관광일반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070		<b>환경보호</b>	140		<b>국토및지역개발</b>
	071	상하수도·수질		141	수자원
	072	폐기물		142	지역및도시
	073	대기		143	산업단지
	074	자연			
	075	해양	150		<b>과학기술</b>
	076	환경보호일반		151	기술개발
080		<b>사회복지</b>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081	기초생활보장		153	과학기술일반
	082	취약계층지원			
	084	보육·가족및여성	160		<b>예비비</b>
	085	노인·청소년		161	예비비
	086	노동			
	087	보훈	900		<b>기타</b>
	088	주택			
	089	사회복지일반			

## 세출예산 분야·부문별 설정기준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 및 선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기관에 의한 입법, 재정 의정관련업무 및 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반 선거관리 업무</li> <li>▪ 의회비, 의회사무처(국·과) 운영경비</li> <li>▪ 의원상해부담금</li> <li>▪ 의회청사이전 및 개축</li> <li>▪ 의회관용차량 구입, 의회장비보강</li> </ul> 제외)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선거관리위탁금등 선거사무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무(016 일반행정)	지방의회 운영 지원 공정 선거관리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계층간 일반적 성격을 띠며 특정기능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li> <li>▪ 지자체 경상·자본보조금 : 보조금 해당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로 분류</li> <li>▪ 징수·조정교부금</li> <li>▪ 재정보전금</li> <li>▪ 재정·세정업무 등</li> </ul>	수입 관리 재정 운영 재정 지원
	014 재정·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분야에 속하지 않는, 지자체에서 유상으로 차입한 부채의 이수·공모 및 이자금액의 상환과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li> <li>▪ 중앙정부등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li> <li>▪ 지방채등 국내차입금 및 국외차입금상환, 상환이자 등</li> <li>▪ 융자 및 출자</li> <li>▪ 기금회계 예치금</li> </ul>	부채 상환 해외채 채무관리 지방재정·금융등 기타 지역개발기금관리
	016 일반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행정수행 업무로서 타 분야·부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li> <li>▪ 청사 신·증축, 유지·보수</li> <li>▪ 공유재산(토지등)구입</li> <li>▪ 자산및물품취득</li> <li>▪ 관용차량 구입및관리</li> <li>▪ 전산장비 보강및유지관리</li> <li>▪ 정보통신, 정보화, 전파관리 관련업무</li> <li>▪ 기타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등</li> <li>▪ 지방행정 홍보활동</li> <li>▪ 일반행정관련 학술용역</li> <li>▪ 자치경영 연구 및 용역, 지역연구원육성</li> <li>▪ 일반 국제교류협력 업무(자매결연 등)</li> <li>▪ 공무원교육경비(교육·고시, 자체위탁교육, 해외교육, 능력개발비)</li> <li>▪ 선거위탁사무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선거관리위탁금등</li> <li>▪ 주민등록제도운영, 호적제적부 전산화사업</li> <li>▪ 자원봉사센터운영, 대민지원 지역정보화, 정보통신기반구축</li> </ul> 제외)지적, 지적정보화사업, 도로명주소사업, 옥외광고물등 (142 지역및도시), 도서관, 문예회관, 복지관 등 사업소의 증축·유지보수는 해당부문에 포함	지방행정 역량 강화 지방공무원 육성 지방공무원교육원운영 주민자치 기반 강화 주민 행정 편의 도모 청사운영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20	공공질서및안전		
	023 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법순찰, 기초질서사범단속</li> <li>▪ 사회적 약자보호, 공공시설경비 등</li> <li>▪ 교통소통관리,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li> <li>▪ 자치경찰의 환경·식품·위생업무(자치경찰 치안)</li> <li>▪ 기타 경찰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업무</li> </ul>	범죄 예방 범죄 수사 공조 체제 구축
	025 재난방재·민방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li> <li>▪ 예비군, 공익근무, 입영장정지원, 병상관리, 지방병무행정지원 등</li> <li>▪ 방재목적의 소하천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제외) 산불예방진화(102 입업·산촌)</li> <li>▪ 비상대책,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방재장비보강 등</li> <li>▪ 민방위관리</li> </ul>	재해 및 재난 예방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 민방위 운영
	026 소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서운영, 119구조구급, 의용소방대운영</li> <li>▪ 소방학교운영 등 소방행정관련 및 재해·재난관리</li> </ul>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소방 인력 양성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급식법 등 개별법에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지원하도록 규정한 업무</li> <li>▪ 학교체육관 및 훈련장건립, 학교운동부지원</li> <li>▪ 학교급식지원 등(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li> <li>▪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li> <li>▪ 유아 및 초·중·등 부문 관련 사학시설자금 융자 제외) 교육대학운영 및 시설(052 고등교육)</li> </ul>	유아·초 중등 교육복지 확충 유아·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 유아초 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052 고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학교 교육관련 업무</li> <li>▪ 시·도립대학 운영경비등, 대학교 학술연구 지원</li> <li>▪ 대학·대학원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li> <li>▪ 대학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등 제외) 산학연구지원(112 산업기술지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능대학(053 직업·평생교육)</li> </ul>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기반 확충 대학 교육복지 확충 고등교육 재정 지원 시·도립대학운영
	053 평생·직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교육 전문기관 및 각 교육기관의 직업교육 관련 업무 및 각종 자격제도 관련 사항</li> <li>▪ 국립전문대학 운영 지원 및 개편 시설비</li> <li>▪ 직업학교등 운영지원 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운영</li> <li>▪ 산업대학운영,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운영</li> <li>▪ 국립공고 등 실업교육 관련 시설 운영 업무</li> <li>▪ 기술대학·기능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li> <li>▪ 실업계·인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li> <li>▪ 산학협동교육, 산업교육, 자격제도, 민간자격 국가공인 업무</li> <li>▪ 사회교육 등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 전반에 관련된 업무 포함) 평생교육및국제교육, 인적자원개발, 국제교육진흥원운영, 학술기관운영, 방송대학·통신대학·원격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li> </ul>	평생학습체제 구축 직업교육경쟁력 강화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출판·방송·영상·광고·종교 관련 행정관리·감독 및 규제</li> <li>공공도서관</li> <li>문화예술사업 및 지원</li> <li>예술·국악단등 육성</li> <li>관련사업소(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 운영경비</li> <li>종교관련 예산, 민속예술, 향토축제 등</li> </ul>	<p>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문화도시 조성 문화산업 육성 문화예술 진흥</p>
	062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자원 및 관광산업 개발·보존, 관광종사원의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의 진흥</li> <li>관광지, 유원지</li> <li>관광상품·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li> <li>기타관광진흥</li> <li>관광홍보 등</li> </ul> <p>제외) 해양관광진흥(103 해양수산·어촌), 향토민속예술 축제(061 문화예술)</p>	<p>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산업 진흥</p>
	063 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관리·시설운영등</li> <li>체육단체 지원</li> <li>선수및체육 지도자 육성</li> <li>각종대회지원</li> <li>생활체육및보급육성, 스포츠산업 육성</li> <li>체육시설 확충, 체육공원 조성</li> <li>체육산업 융자</li> <li>체육시설관련사업소운영, 기타 체육진흥</li> </ul>	<p>생활체육 육성 전문체육 육성 체육산업 육성</p>
	064 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승계를 위한 정책 지원 및 집행활동</li> <li>문화재행정</li> <li>문화재(무형포함)관리</li> <li>문화재개발</li> <li>천연기념물</li> <li>유적관리 등</li> </ul>	<p>유형문화재 보존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p>
	065 문화 및 관광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문화예술(061)부터 문화재(064)에 속하지 않는 사항</li> </ul>	
070	환경보호		
	071 상하수도·수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하수도·지하수등 수질의 보존·개선·관리, 수질 오염의 방지 및 사후조치, 오·폐수의 관리 및 처리 등과 관련된 업무</li> <li>지방상수도 개량</li> <li>배수지·취수장</li> <li>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하수처리방</li> <li>물관리사업소, 수질오염 측정시설 운영등</li> <li>토양의 보호 및 오염토양의 정화</li> </ul> <p>제외) 농업용수개발(101 농업·농촌), 상·하수도 및 공업용수의 건설·운영·관리(141 수자원)</p>	<p>상수도·식수 관리 하수도 관리 지하수 관리</p>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72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 및 유해물질의 수집·처리·처분·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li> <li>청소관리</li> <li>쓰레기매립장및소각시설설치 운영</li> <li>분뇨처리</li> <li>종합재활용사업등</li> </ul>	폐기물 감량 폐기물 회수 폐기물 자원화 청소관리
	073 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기와 기후의 보호 및 소음과 진동 축소를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li> <li>대기오염및소음측정시설 건설·운영·관리</li> <li>공해배출업소지도</li> <li>천연가스자동차보급</li> <li>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 등</li> </ul> 제외) 소음방지벽·울타리와 기타 소음방지 시설물 (소음감소 재료를 이용한 도시고속도로와 철로 일부구간의 재포장 등)의 건설 등(120 수송및교통)	대기오염 관리 생활공해 관리
	074 자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보존,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전 등 자연환경보전 관련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li> <li>자연환경공원조성, 자연공원</li> <li>자연보호시설물 정비</li> <li>생태계보전사업 등</li> </ul> 제외) 천연기념물 관리(064 문화재)	생태계 보호 자연환경 보호
	075 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환경 및 생태계보전,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해양수질관리 등 해양보전을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li> <li>연안환경정비사업</li> <li>해양환경감시대 운영</li> <li>연안관리, 공유수면매립·운영관리 등</li> <li>해양환경개선 및 해운환경개선 기반조성</li> </ul>	연안환경정비 해양오염 관리
	076 환경보호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보호 분야의 다른 부문(071 상하수도·수질부터 075 해양)에 속하지 않는 환경정책, 환경계획, 환경관련 종합지원업무</li> </ul>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 최저 생계 및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업무</li> <li>기초생활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li> <li>자활지원, 기초보장지원, 지역사회복지 등</li> </ul> 제외) 지방공공근로사업(086 노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082 취약계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li> <li>사회복지 종합지원 정책</li> <li>장애인·불우아동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li> <li>복지회관운영</li> <li>사회복지 기반조성, 사회복지 지원정책</li> <li>사회복지 사업평가 등</li> <li>지역사회복지</li> <li>노숙자보호, 부랑인시설보호, 의사상자 및 재해구호</li> </ul> 제외)읍면동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은 (016 일반행정)	취약계층 아동 보호 장애인 복지 증진 부랑인 보호 및 지원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84 보육·가족 및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윤락행위 방지,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개발, 아동·보육 관련 업무</li> <li>▪ 여성복지(시설물설치 포함)</li> <li>▪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li> <li>▪ 여성단체 지원 등</li> <li>▪ 남녀차별금지, 여성인력 양성 등 여성의 권익증진</li> <li>▪ 보육인프라 구축, 보육시설 운용, 보육료 지원</li> <li>▪ 가족윤리교육, 가족계획, 가정의례 등 가족문화</li> <li>▪ 모·부자 복지 등</li> </ul>	<p>보육·가족 지원 여성 복지 증진</p>
	085 노인·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령에 따른 제반 위험(소득상실, 사회생활 참여 저하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업무</li> <li>▪ 청소년 육성·보호·활동지원을 위한 업무</li> <li>▪ 노인 생활안정, 노인 의료보장, 노인 일자리 지원</li> <li>▪ 노인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li> <li>▪ 노인복지관운영, 장묘사업(묘지공원 조성 포함) 등</li> <li>▪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보호</li> <li>▪ 청소년 시설 용자, 기타 청소년 관련 지원</li> </ul>	<p>노인 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 및 육성</p>
	086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조건외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 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및 고용보험, 직업능력 개발훈련, 기타 노동에 관한 업무</li> <li>▪ 근로자지원등 노정관리</li> <li>▪ 실업대책,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등</li> <li>▪ 노동행정, 지방노동관서 운영, 노동위원회</li> <li>▪ 고용안정, 고용안정용자지원, 고용알선, 고용환경개선</li> <li>▪ 능력개발, 능력개발용자지원, 직업능력개발</li> <li>▪ 고용보험지원·반환, 고용보험 연구개발, 직업재활지원</li> <li>▪ 장애인근로자 용자, 장애인시설 설치비용 용자</li> <li>▪ 기능경기대회 지원, 고용정보 관리, 직업훈련 지원</li> <li>▪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관련 업무, 생활안정대부사업</li> <li>▪ 근로자복지지원, 근로자휴양시설지원, 실직자점포용자</li> <li>▪ 기타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li> <li>▪ 공무원노조관련 업무</li> </ul>	<p>고용 촉진 및 안정 근로자 복지 증진</p>
	087 보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지원 및 군인보험 등 법령이 정하는 보훈에 관한 업무</li> <li>▪ 보훈행정, 보훈의료복지</li> <li>▪ 국가유공자단체사업운영, 국가유공자 복지사업</li> <li>▪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국가유공자 등 위로·위문</li> <li>▪ 참전유공자지원사업, 제대군인 대부지원, 군인보험</li> <li>▪ 5.18민주유공자 대부지원, 승모사업, 묘소단장사업</li> <li>▪ 독립운동 관련 문헌발간 등 편찬사업</li> <li>▪ 기타 보훈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li> </ul>	<p>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p>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88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주택건설, 수요자용자지원</li> <li>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주택개량</li> <li>서민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매입임대</li> <li>재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주택관련 금융지원</li> </ul>	주거 환경 개선 서민 주거 안정
	089 사회복지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생활보장(081)부터 주택(088)까지 속하지 않는 사항</li> </ul>	
090	보건		
	091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업무</li> <li>의료원·보건소·진료소등 운영, 수도불소화사업</li> <li>응급의료정보센터, 정신보건센터, 보건환경연구원등 운영</li> <li>공중보건 및 공중위생관리, 전염병역학조사·관리</li> <li>생물테러감시, 한센병·희귀난치성환자 관리</li> <li>보건관련 연구개발비, 기타 보건행정비 등</li> </ul>	방역·구호 건강 증진 의료원등 병원운영지원 보건환경연구원운영
	093 식품의약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의약안전에 관한 행정·관리·감독 및 규제</li> <li>식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li> <li>의약외품, 마약등</li> </ul>	식품·위생 관리 의약품 관리
100	농림해양수산		
	101 농업·농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산·농촌개발·식량·농지·수리·농산물유통 및 축산에 관한 업무</li> <li>경지정리, 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 조성</li> <li>농업용수개발, 농업유통특작지원</li> <li>농업기술보급, 농업관련 연구개발비</li> <li>농업기술센터운영,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운영</li> <li>농과대학시설 장비지원, 기타 농촌진흥 등</li> <li>축산물수급관리·축산유통구조개선</li> <li>축산물위생·방역관리, 축산단지조성</li> <li>기타 축산지원 등(종축장운영)</li> <li>유기동물 보호</li> </ul>	농가 소득 안정 농업 경쟁력 강화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농촌 인력육성 농업 기술개발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102 임업·산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지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및 산림경영의 연구개선에 관한 제반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li> <li>조림, 사방, 육림</li> <li>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녹지사업</li> <li>임업관련 연구개발비, 기타 산림행정지원 등</li> </ul>	임업 경쟁력 강화 산림 재해방지 산림 자원화
	103 해양수산·어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해양정책의 수립 및 집행, 해양조사, 해양자원 및 해양관련 국제협력등 관련 업무, 수산유통시장의 운영</li> <li>내수면개발·관리, 어촌종합개발, 어항건설</li> <li>양식어업, 어장환경정화, 인공어초시설</li> <li>수산업관련 연구개발비</li> <li>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건설·운영</li> <li>해양관광진흥(해수욕장, 해양레저사업)</li> <li>기타 수산지원 등</li> </ul> <p>제외) 해운, 물류, 선박·선원관리, 항만건설 및 관리 (124 해운·항만), 해양환경개선및해운환경개선 기반조성, 공유수면매립·운영관리, 연안관리(075 해양)</p>	어촌 소득 안정 해양 환경 보전 해양수산 자원화 수산물 유통관리 해양 재해방지 수산 인력 육성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110	산업·중소기업		
	111 산업금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의 창업·구조조정 및 일반운영을 위한 기업금융 및 자금지원 관련 업무</li> <li>지역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원</li> <li>중소기업육성지원(중소기업경영안정사업 및 자금지원) 제외) 대학학술활동지원(052 고등교육)</li> </ul>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기타의 산업금융지원
	112 산업기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의 기술혁신및육성, 기술개발지원등 기업에 대한 기술관련 지원업무</li> <li>기술지원을 통한 각종 중소기업육성지원 등</li> <li>산학연구지원, 산학협동기술개발지원</li> <li>과학기술진흥사업, 지역연구개발특구구축, 생물자원연구사업</li> </ul>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기타의 산업기술지원
	113 무역 및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 및 무역기반 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등 대외 상공기능 관련 업무</li> <li>외자유치사업</li> <li>종합무역센터건립</li> <li>외국인투자유치활동비 등</li> </ul>	수출 기반 확대 외국 투자유치
	114 산업진흥·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진흥, 자동화·설비투자 확대 지원 및 혁신형 산업구조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업무</li> <li>첨단산업육성, 테크노파크조성, 민자유치사업</li> <li>지역특화·진흥산업 육성, 지역산업진흥사업</li> <li>지역혁신능력배양사업, 지역혁신연구센터 건립·운영</li> <li>창업자 양성과 생산성 향상 등</li> <li>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li> <li>생산성향상을위한 자동화설비 투자지원</li> <li>벤처기반구축, 기업성장지원, 재래시장활성화</li> <li>전자상거래 지원</li> </ul>	첨단산업 육성 산업진흥 산업구조 고도화
	115 에너지및 자원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 및 지하자원 개발, 에너지 수급안정 및 합리적·효율적 에너지 이용의 증진 관련 업무</li> <li>광공업 진흥대책, 전기·연탄·에너지관리</li> <li>계량기관리, 지역에너지사업 등</li> </ul>	에너지 수급 안정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금융지원(111)부터 에너지및자원개발(115)에 속 하지 않는 사항</li> </ul>	
120	수송및교통		
	121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건설 및 도로관련 시설물(교량, 터널등)의 건설·관리 및 운영 관련 업무</li> <li>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건설</li> <li>자전거도로 정비</li> <li>도로·교량(도로관련)·터널 건설</li> <li>도시고속도로등 운영에 따른 소음방지벽·울타리</li> <li>기타 소음방지 시설</li> <li>제외)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143 산업단지), 항만 도로 건설(124 해운·항만),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건설(142 지역및도시)</li> </ul>	광역도로 건설·확포장 지방도 건설·확포장 도로시설 관리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123 도시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철, 경량전철등 도시철도 건설·유지·보수·안전 점검 및 수송관련 업무</li> <li>도시철도건설</li> <li>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및 노선지정에 관한 사항</li> <li>도시철도사업의 경영개선 및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li> <li>경전철등 신교통수단의 개발·도입</li> <li>철도운영에 따른 소음방지벽·울타리와 기타 소음방지시설</li> </ul>	<p>도시철도 확충 도시철도 운영·관리</p>
	124 해운·항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만 및 항만 배후단지 건설·관리, 해운물류(선박·선원 관리 포함), 해상안전관리등과 관련된 업무</li> <li>항만, 항만도로, 도크, 운하, 교량, 터널</li> <li>방파재, 부두, 선창, 터미널, 배후단지등</li> <li>내수면·연근해·원양 수송체계의 운영·관리</li> <li>선원의 양성·등록·면허·감독</li> <li>승객안전 및 화물보안 규제</li> <li>해운 물류관련 사업허가·육성·지원</li> <li>선박관리, 선박 입출항관리</li> <li>항만운영, 항만관제 등 해운물류 관련 제반업무</li> </ul>	<p>해운·항만시설 확충 해운 물류시설 관리</p>
	125 항공·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항건설, 항공수송 관련 업무</li> <li>공항시설의 건설,보수,개량 및 운용</li> <li>항공기·조종사·승무원·지상요원의 등록,면허,감독</li> <li>승객안전규제, 항공사고조사 등 항공수송관련 감독 및 규제</li> <li>항공수송체계관리(노선배정,항공운입,항공통신,전자시설등)</li> <li>항공안전관리, 항공수송 관련 국제 협력·협정관리 등 포함</li> </ul>	<p>항공수송체계관리 공항이주단지조성</p>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류, 대중교통, 자동차관련 육운 업무</li> <li>물류, 유통 및 보관시설 건설</li> <li>광역대중교통시설(환승주차장, 버스공용차고지등 건설)지원</li> <li>육상교통관련 수송행정</li> <li>교통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li> <li>자동차등록, 위반차량관리, 주차정책 등 교통관련 수송 행정</li> <li>화물터미널건설, 화물기지건설</li> <li>유통단지 진입도로건설</li> <li>화물자동차 공영차고, 휴게실건설</li> </ul>	<p>주차질서 확립 대중교통 안전 확보 대중교통 육성 지원 교통행정 개선 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 차량등록사업소 운영</p>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41 수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자원개발 및 하천관리 관련 업무</li> <li>소하천정비, 하천준설, 하천개보수</li> <li>치수, 댐주변지역정비사업</li> <li>수문개발, 수로(하천) 건설 운영</li> <li>공업용수 확장 등 건설·운영·관리</li> <li>상·하수도 건설·운영·관리</li> </ul> <p>제외) 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114 산업진흥·고도화), 농업용수개발(101 농업·농촌)</p>	<p>하천 정비 댐·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p>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142 지역및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조사 및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권역 및 산업단지를 제외한 기타 지역 및 도시개발 관련 업무</li> <li>▪ 주택건설 및 주택관련 정책</li> <li>▪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사업등 건설 및 건축관리</li> <li>▪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등</li> <li>▪ 도서·별지·오지종합개발, 취약지개선, 소도읍육성사업</li> <li>▪ 지역개발관련 사업소 운영 등</li> <li>▪ 지적, 지적정보화사업, 도로명주소사업, 옥외광고물</li> <li>▪ 도시자연공원, 녹화사업, 공원조성·관리</li> <li>▪ 건설행정,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사업, 댐주변지역개발</li> <li>▪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건설</li> </ul> 제외)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수요자용자지원, 주택개량(088 주택)	주택 건설 및 운영 도시개발 택지개발 취약지 개발
	143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관리 관련 업무</li> <li>▪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li> <li>▪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li> <li>▪ 외국인투자단지 조성 및 운영</li> <li>▪ 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li> <li>▪ 도로건설 중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포함</li> </ul> 제외) 산업단지조성의 지역사회개발(142 지역및도시) 제외) 산업단지내 공업용수도 건설(141 수자원)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과학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분야별 주요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업무</li> <li>▪ 원자력 관련 업무</li> </ul> 제외) 과기부 외의 산학협동 기술개발 지원(112 산업 기술지원)	과학기술 고도화
	152 과학기술 연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 인력양성, 과학문화 창달, 과학기술 협력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업무</li> <li>▪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 지원</li> </ul> 제외) 과기부 이외 부처 산하 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 지원(016 일반행정)	과학문화 육성·지원
	153 과학기술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개발(151) 내지 과학기술연구지원(152)에 속하지 않는 사항</li> </ul>	첨단산업 육성·지원
160	예비비		
	161 예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li> </ul>	
900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 업무 관련 지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운영경비(인건비, 기본경비)</li> <li>▪ 보조금반환금, 과오납금, 잡손금, 당겨쓰기충당금 등</li> </ul>	